한림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안내

1 상세일정 및 안내

- 프로그램: 2026학년도 동계 + 2027학년도 1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
- 상세일정 (2개월, 4개월, 6개월)
  - 동계: 2027. 1. 1.(금) ~ 2027. 2. 28.(일) / 2개월
  - 27-1학기: 2027. 3. 1.(월) ~ 2027. 6. 30.(수) / 4개월
- 참여대상 및 학과(전공): 본교 전체 학과(전공) 3, 4학년 대상
  * 학과 상세 내용은 한림대학교 홈페이지(https://www.hallym.ac.kr/hallym/992/subview.do)
- 근무조건: 회사 전일제 기준 운영

2 실습비 및 지원사항

-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 기준 최저임금 75%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기본조건
-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월 기준 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 시 학교에서 최저임금 25%의 지원금 지급

실습기관 → 학생	학교 → 실습기관
최저임금 100% 이상 지급	대학지원금 지급(25%)
최저임금 75% 지급	대학지원금 지급 불가

ex) 2027년 기준 최저임금 100%(2,236,300원)를 학생에게 지급 -> 최저임금의 25%(559,075원) 지원
2027년 기준 최저임금 75%(1,677,225원)를 학생에게 지급 -> 지원금 수급 불가
* 각 학기 종료 후 지원금 일시 지급

3 프로그램 세부일정

구분	기간	비고
실습기관 수요조사	2026. 10. 19.(월) ~ 2026. 11. 13.(금)	산학협력통합플랫폼 또는 이메일 접수
학생모집	2026. 11. 9.(월) ~ 2026. 11. 22.(일)	
학생선발	2026. 11. 23.(월) ~ 2026. 12. 4.(금)	실습기관 면접
직무교육 및 O.T	2026. 12. 22.(화)	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
현장실습 진행	2027. 1. 1.(금) ~ 2027. 2. 28.(일)	6개월 진행 시 6/30까지

※ 진행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※ 1학기 일정 추후 안내

4 근무기준 및 기타사항

- 실습기간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대학에 해당 사항 공유 필수
- 실습생의 근무요일 및 시간, 연장근무 등에 관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사전에 대학과 상의
-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또는 산학교수가 1회 기관방문 시행 예정

5 서류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: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Campus Life Center 3층 현장실습지원센터
- E-MAIL: intern@hallym.ac.kr
- FAX: 033-252-1032
- TEL: 033-248-1084, 1086, 1087
-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: https://intern.hallym.ac.kr
- 산학협력통합플랫폼: https://hallymee.hallym.ac.kr

[참고]

구분	현장실습생	근로계약서 체결 현장실습생
정의	현장실습생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 의미	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준과 범위 외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 등 학생 보호 조치 목적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장실습생
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조 - **현장교육 담당자 지정 및 운영계획 등**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. - 월환산액 기준 **당해 연도 최저임금 75%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** (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)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1조 - 연장 실습시간이 **1주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** 적용 - 월환산액 기준 **당해 연도 최저임금 100%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**
근로계약	**미체결**	**체결**
	근로문제 예방 및 학생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미체결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하며, **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함**.
보험가입	**산재보험만 가입**	**4대보험 전부 가입**
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18조 *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 대하여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」 (고용노동부 고시)에 의하여 **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.**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**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적용**
회계처리	**비과세**	**과세**
	-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 2021. 3. 9.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법령 해석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의 **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, 각 회사별 상황 및 기업회계 규칙에 맞게 비과세 처리** ***주로 활용되는 현장실습 비과세 계정** **: 교육훈련비, 연구 및 인력개발비**	*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3조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**여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계처리**

*** 최저임금액의 100% 미만을 지급함에도 4대보험 모두 가입(산재보험만 필수) 및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, 노무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.**

[별첨1]

한림대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서

*작성방법 : 공란에는 내용을 기입하며, [ ] 에는 ○ 기입하여 작성

기관(법인)명		영문기관명	
대표자명		사업자등록번호	
개업 연월일	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	
종업원 수		매출액	
사업장소재지			
홈페이지			

기관현황	구분	상장여부	사업의 종류(업태)	사업의 종류(종목)
	대기업 [ ]	코스피 [ ]		
	중견기업 [ ]	코스닥 [ ]		
	중소기업 [ ]	비상장 [ ]		
	공공기관 [ ]			
	협회/기타 [ ]			

기관 근로형태	정규 근로시간	▪ 1일 기준 :[8]시간 / ▪ 1주 기준 : [40]시간
	정규 근로일수	▪ 주 : [5]일 / ▪ 근로요일 : [월~금] *월~금 등 요일 기입

관리부서	부서명		성명		직위
	연락처		휴대폰		
	이메일				

전형방법	서류선발 → 면접선발			
전형절차 및 일정	접수마감일자	면접일자	최종선발일자	※참고일정
	00월00일00시 [ ]	00월00일00시 [ ]	00월00일00시 [ ]	한림대 현장실습지원센터
	일정별도협의 [○]	일정별도협의 [○]	일정별도협의 [○]	운영일정 준수

운영계획	붙임 1.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에 따라 실시함

기타사항	*Co-op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이사항 기입(필요시 기입)*

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기준 및 절차
[운영기준]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-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) 참고
[운영절차] (학교)Co-op 참여 의뢰(기관주도형의 경우 다음 단계부터) ▸ **[현재단계](기관)Co-op 참여 신청 및 운영계획서 회신(송부)** ▸ (학교/기관)상호 협의 후 시행 확정 ▸ (학교)Co-op 정보공지 및 교과목 개설 ▸ (학교)학생 신청접수 및 추천 ▸ (기관)학생선발 ▸ (학교)사전교육/수강신청 실시 ▸ (학교/기관/학생)3자 협약체결 ▸ (기관/학교)산재/상해보험 가입 ▸ (기관)운영계획에 따른 실시/출석관리 및 평가실시 ▸ (학생)보고서작성 ▸ (학교)성적 평정

붙임 서류	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
	2. 사업자 등록증 ▸최초 참여 시 또는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 제출
	3. 기관소개 자료 ▸최초 참여 시 또는 홍보 목적 등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출

본 기관에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,
이에 귀 대학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과정에 대한 참여 신청 및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27년 00월 00일

[실습기관명 기입] (날인/서명)

한림대학교 귀중

[별지 제1호 서식]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서

■ [붙임1]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 및 직무기술서

운영과정	▪방학과정 [ ] ▪학기과정 [ ] ▪방학/학기 연계과정 [ ]
운영유형	▪직무체험형 [ ] ▪채용연계형 [ ]
실습기간	2027년 월 일 ~ 2027년 월 일
정규실습 시간	오전 09시 00분 ~ 오후 18시 00분 (▸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작성)
실습요일	월 [○] 화 [○] 수 [○] 목 [○] 금 [○] 토 [ ] 일 [ ]
연장실습 여부	▪연장실습 없음 [○] ▪상황별 실시 [ ] ▪주기적/상시적 실시 [ ]
산재보험 가입	▪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함(법적 의무가입 / 미가입시 운영 불가)
기타사항	▪운영 과정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Y [ ] / N [ ]
	*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

실습지원비	정규실습시간	▪지급기준 : [월/주 기준 중 선택] ▸ [월 기준] / [2,236,300]원 이상
	연장실습시간	▪지급기준 : [시간 기준] / [ ]원 (*교육부 고시 기준에 따라 작성)
	지급예정일	▪당월 [ ]일 또는 ▪익월 [ ]일 (*익월의 경우 15일 이내 지급)
기타 지원 사항		▪식사 [ ] ▪교통 [ ] ▪기숙사 [ ] ◂현물지원 사항

현장교육 담당자	부서명		성명		직위
	연락처		휴대폰		
	이메일				

실습 직무	부서명		
	주소	*'실습기관 기본 정보' 상의 주소(위치)와 다른 경우 작성*	
	직무명		
	교육 목표	*Co-op 직무 수행을 통해 학생이 얻게 되는 교육성과 측면 기술 *	
	직무개요	*무엇을, 왜(목적, 이유), 어떻게(방법) 어디까지(범위)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*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실시할 내용으로만 기입 *실제와 달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거나, 단순·반복적 직무 수행이 확인될 경우 *근로 등의 민원 및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관련 직무 사항을 확인하고 *검토하여야 함	
	운영 / 지도 계획	1개월차	
		2개월차	
		3개월차	
		4개월차	
		5개월차	
		6개월차	

학생 요건	전공 (인원)	OO학과 1명, □□□학과 1명 또는 OOO학과/□□□학과 중 1명 등으로 구체적 대상 전공 또는 계열을 특정하여야 함
	학년	
	학점/ 평점	
	요구 역량	Co-op 참여 학생에게 요구되는 OA역량, 외국어 역량, 지식/기술역량, 전공과목 이수여부 등 기입
	기타 사항	

[별첨2]

사전 서면점검서(신규 실습기관용)

한림대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사전 서면 점검서

■ 목적

- 본 사전 서면점검서는 실습교육의 안전성 등의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,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9조제6항에 따른 표준 서식입니다.
- 학교와 실습기관 간 처음으로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서식으로, 실습기관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.

■ 실습기관 정보

기관(법인)명	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	
업태		종목	

■ 자체 점검표 (실습기관에서 작성)

	점검 사항	내용 (해당 사항에 체크 또는 기술)
1	실습기관의 사업장(근무환경) 형태 [복수선택 가능]	☐ 일반사무실 형태 ☐ 연구소 형태 ☐ 생산/제조 등의 공장 형태 ☐ 주 사업장 외(건설현장, 자동차/선박/항공 등) 형태 ☐ 기타 :_____
2	학생이 배정될 부서 또는 실습공간의 환경 및 형태 [복수선택 가능]	☐ 일반사무실 형태 ☐ 연구소 형태 ☐ 생산/제조 등의 공장 형태 ☐ 주 사업장 외(건설현장, 자동차/선박/항공 등) 형태 ☐ 기타 :_____
3	학생에 대한 실습공간 배정 형태	☐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 배정된다. ☐ 소속 근로자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배정된다.
4	학생에게 실습에 필요한 물품 제공 여부(책상, PC 등)	☐ 모든 필요 물품 및 비품을 제공한다. ☐ 일부 제공한다.(학생 준비 필요 물품 :_____) ☐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.
5	학생의 제조 또는 생산 업무에 참여 여부	☐ 물품 제조·생산 등의 활동(업무)에 참여하지 않는다. ☐ 물품 제조·생산 등의 활동(업무)에 일부 참여한다. ☐ 물품 제조·생산 등의 활동(업무)을 주 실습 직무로 참여한다.
6-1	학생이 수행할 실습 직무의 화학물질 또는 유해물질 등의 취급 여부	☐ 취급하지 않는다. ☐ 취급한다.(6-2 문항으로)
6-2	화학/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 안전보호장비(구) 제공 여부	☐ 제공된다. ☐ 제공되지 않는다.
	※ 실험·실습 형태 및 화학·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현장교육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함	
7	기타 유의사항(필요시 작성)	